

감 사 보 고 서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운영 실태조사 -

2022.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 현황	3
III. 감사결과	9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1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 '22년 <자산운용 및 관리실태> 자체감사 과정에서, ○○○○부서가 손실자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운영한 사실이 확인 됨
- 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 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 부정·부조리 행위를 예방·시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및 제도를 개선하여 기금운용의 안전성, 신뢰도 강화 및 기관의 합리적 경영판단 촉구

2. 감사대상 및 범위

- 점검대상 : ○○○○부(○○○○부서)
- 대상기간 : 15년 ~ 현재까지 손실자산 회복을 위해 추진 된
★★★★★★제일차(유) 설립·운영실태 전반

3. 중점점검 및 착안사항

- 기금운용의 절차적 정당성 검토
 - 특수목적법인을 활용하여 설계 된 자산관리 운영구조의 관리·감독 및 통제 시스템 점검
- 부조리한 회계처리 조사
 - 특수목적법인과의 대출계약 이행과 관련한 회계부정 발생여부 점검

- 업무관계자 부당행위 조사
 - 부실자산 관리 소홀여부 점검
 - 기금손망실 발생여부 점검
- ★★★★★제일차(유) 운영·관리의 실효성 검토
 - 부동산PF(부실자산) 사후처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효율적 처분 방안 강구

4.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인원(1명) : 감진규 과장
- 감사기간
 - ' 22.07.04.(월) ~ 11.18.(금) : 예비조사
*★★★★★★제일차(유) 회계감사 실시
 - ' 22.11.21.(월) ~ 11.25.(금) : 실지감사 / 5일간
 - ' 22.11.28.(월) ~ 12.30(금) :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작성
 - ' 22.12.30.(금) : 감사결과 보고
 - ' 22.12.30.(금) : 감사결과 확정 및 처분요구서 발송

5.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 최종 확정
 - 지적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 수렴 후 감사실의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 22.12.30(금) 점검결과 최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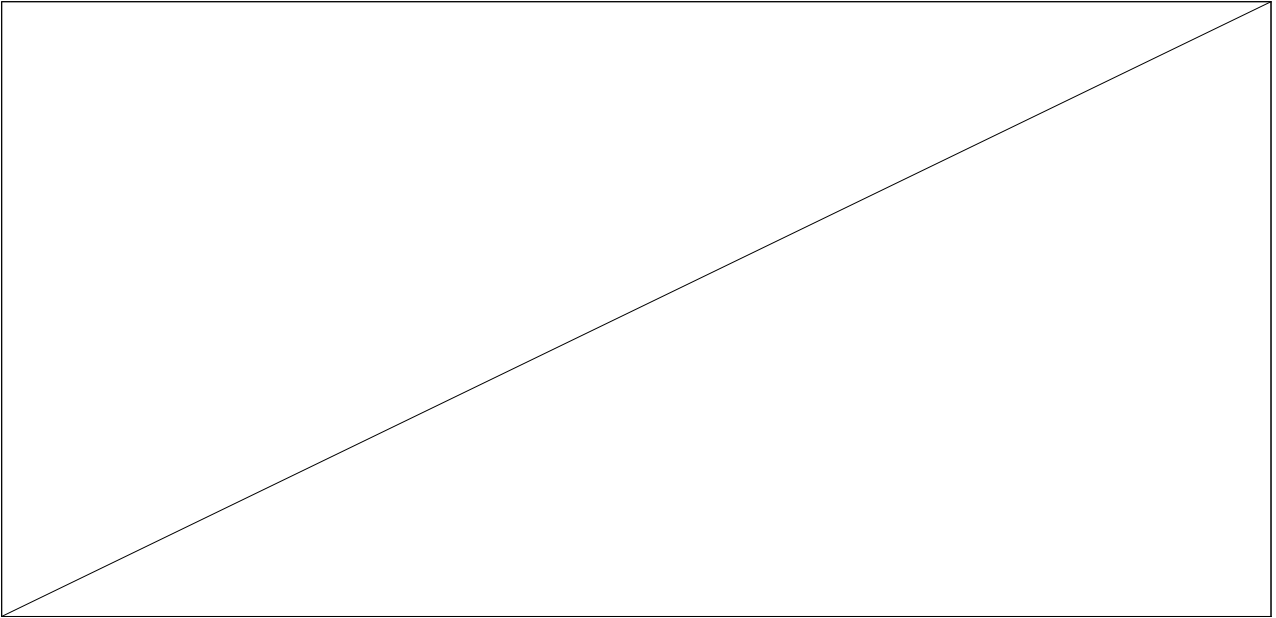
II. 감사대상 현황

1. ★★★★★제일차(유) 설립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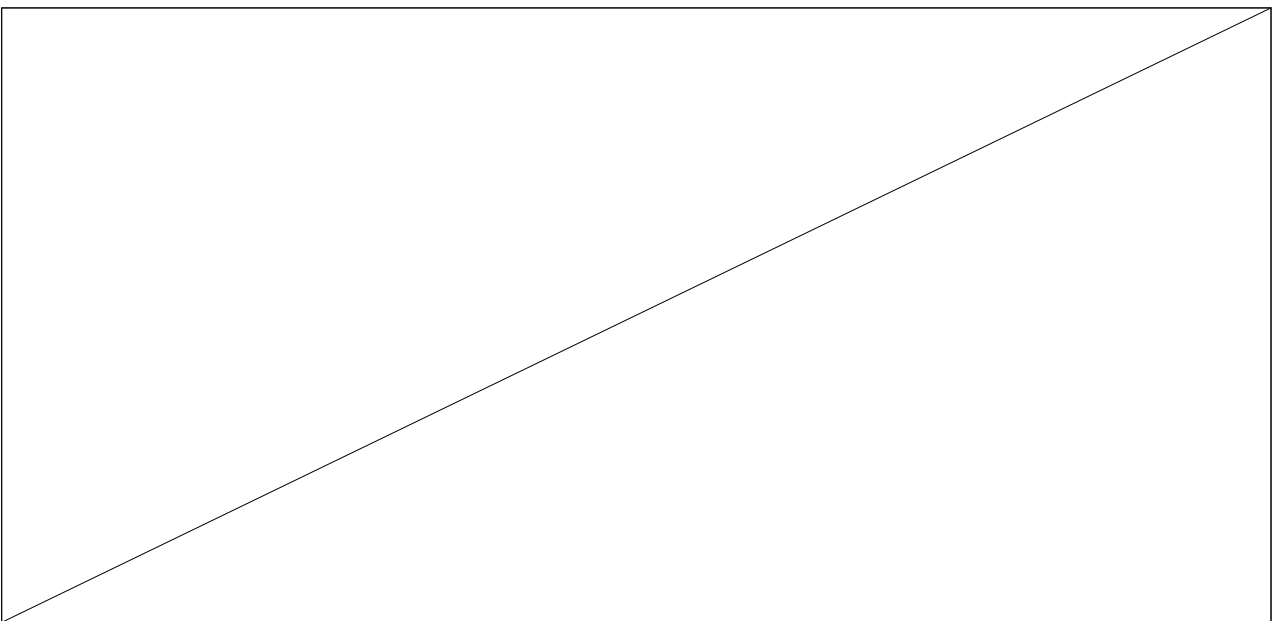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06.8월 AA건설(주)을 시공사로 하는 ☆☆☆ 주상복합 개발사업에 특정금전신탁에 10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08.3월)로 공사지연 및 분양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함
- 이에 예술위는 '12.4월 BBBB신탁(주)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2.9월 CC건설(주)로 시공사 변경·선정함
- '14.12월 준공 및 입주개시하였으나, 미분양 상태(아파트 88세대 중 27% 미분양, 오피스텔 18세대 중 93% 미분양 및 상가 33호실 전체 미분양, '15.2월말 기준)로 인하여, 예술위는 투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음
- 당시 예술위는 수익권 3순위로서 미분양 물건을 경매처분 하면 이에 대한 배당금을 수취하고 종결할 수 있었으나, 선순위채권자들이 대물변제를 희망함에 따라, 이 건과 관련하여 복수의 회계법인에 회수가능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예술위도 대물변제를 받는 것이 투자원금 회수에 더 유리하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착수
- 이에 '15.9월 ★★★★★ 주상복합 건물 전면1층상가 전체(26개호실, 이하 ‘☆☆☆상가’)를 임대·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 ★★★★★ 제일차(유)가 ☆☆☆상가 매각시 청산을 전제로 설립되고, 예술위는 새로운 신탁계약으로 ☆☆☆상가를 간접 취득함
- 예술위는 ☆☆☆상가 관련 업무처리를 ★★★★★제일차(유) 명의로 진행하고, 이에 발생하는 수익금은 예술위로 귀속될 수 있도록 100억 상당의 대출계약을 비롯하여 사업약정, 담보신탁계약, 근질권

설정계약 등을 통해 예술위가 사실상 ★★★★★제일차(유)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관리함

[그림 1] ★★★★★주상복합개발사업관련 대물변제를 위한 새로운 신탁계약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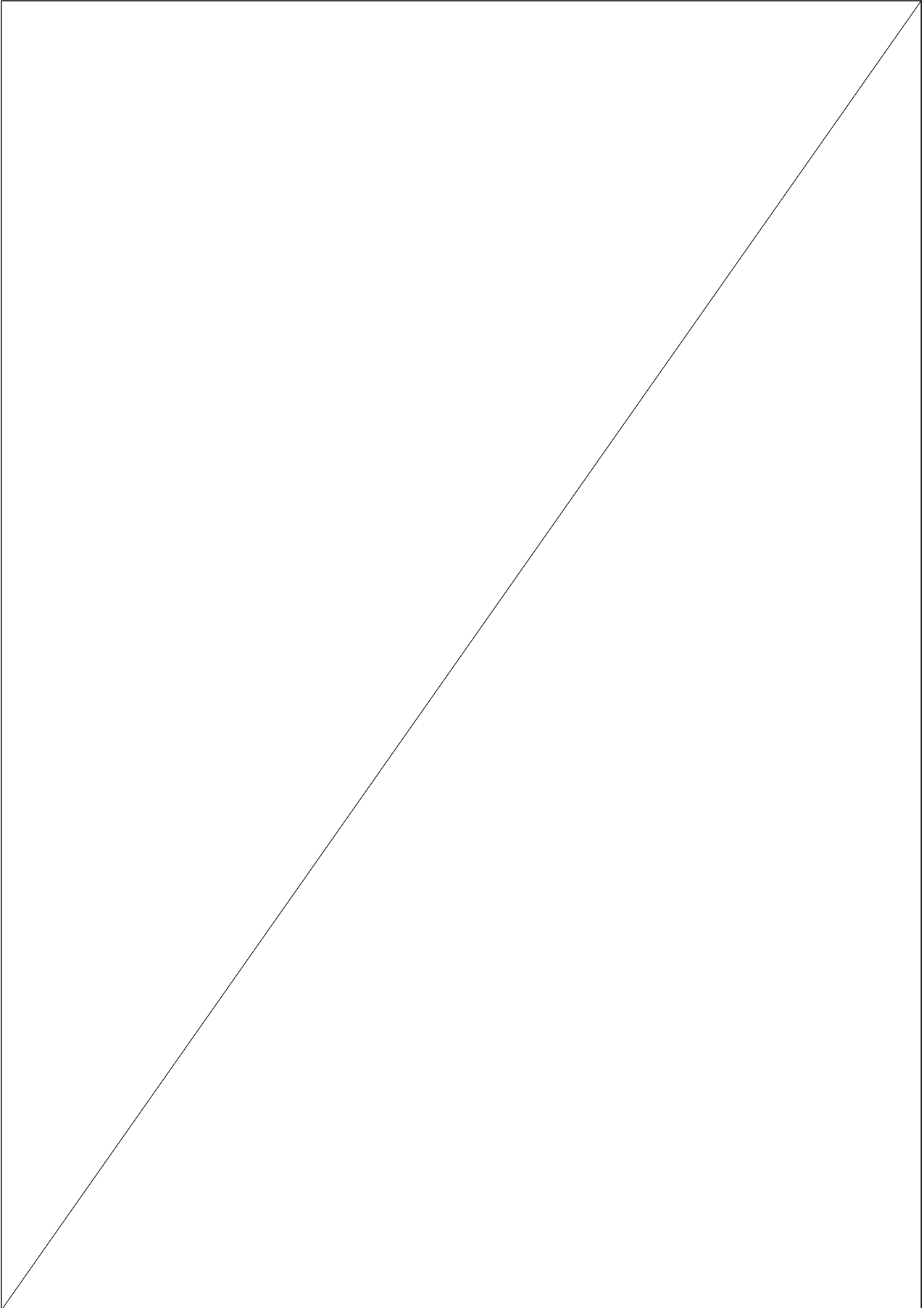
[그림 2] 예술위 - ★★★★★제일차(유) 관계도



2. ★★★★★제일차(유) 운영 · 관리 현황

- 예술위는 신탁수익자 ★★★★★제일차(유) 지정으로 예술위는 원금 100억원 및 이자에 대한 채권 보유
 - 사실상 ★★★★★제일차(유)가 원금 및 이자 상환이 불가능하도록 구조로 설계
 - 채무소멸 전까지 ★★★★★제일차(유)는 파산신청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불가
 - ★★★★★제일차(유)의 채무소멸은 상가매각 · 회수를 해야만 가능
- ★★★★★제일차(유)의 의사결정, 운영 권한은 실질적으로 예술위에 있음
 - 신탁부동산 사용, 수익 및 처분하는 사업에 발생하는 권리관계 정립
 - ★★★★★제일차(유)는 예술위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음
 - ★★★★★제일차(유)의 법인인감과 인감카드는 예술위가 보관
 - 예술위는 업무위탁자(PM사)를 지정할 수 있음
 - 現 DDDD파트너스(주) / 대표 EEE
 - 대표는 ★★★★★제일차(유) 대표와 동일인으로 ☆☆☆상가 간접취득구조 설계당시 법률 자문을 담당함(법무법인 ㉮㉮㉮㉮)
 -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집행보조업무(상가운영관리) 등을 위탁
 - 용역대금으로 지출계좌에서 월 5,500,000원 지급(' 22년 기준)
- 예술위는 ★★★★★제일차(유)의 수익권 및 자금관리계좌에 대하여 질권설정
 - 당좌자산 : 588,578,310원 (회계감사, ' 22.6월 기준)
 - 예술위 ○○○○부(◎◎◎◎부서)에서 ★★★★★제일차(유)의 인감, 계좌 등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중 (단기금융상품 투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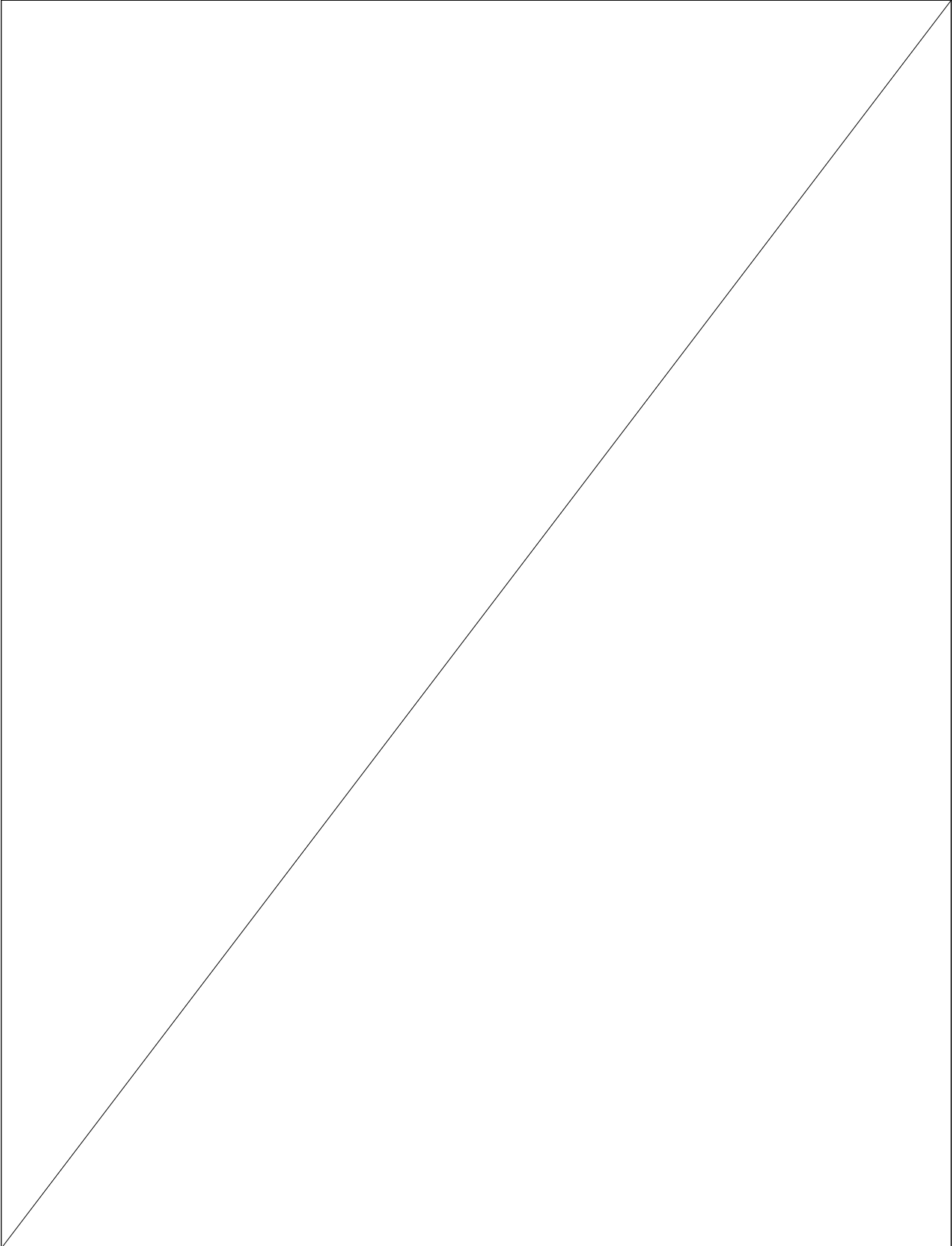
[표 1] ★★★★★제일차(유) 손익계산서 (최근 3개년)



[표 2] ★★★★★제일차(유) 재무상태표

제7기 2022년 06월 30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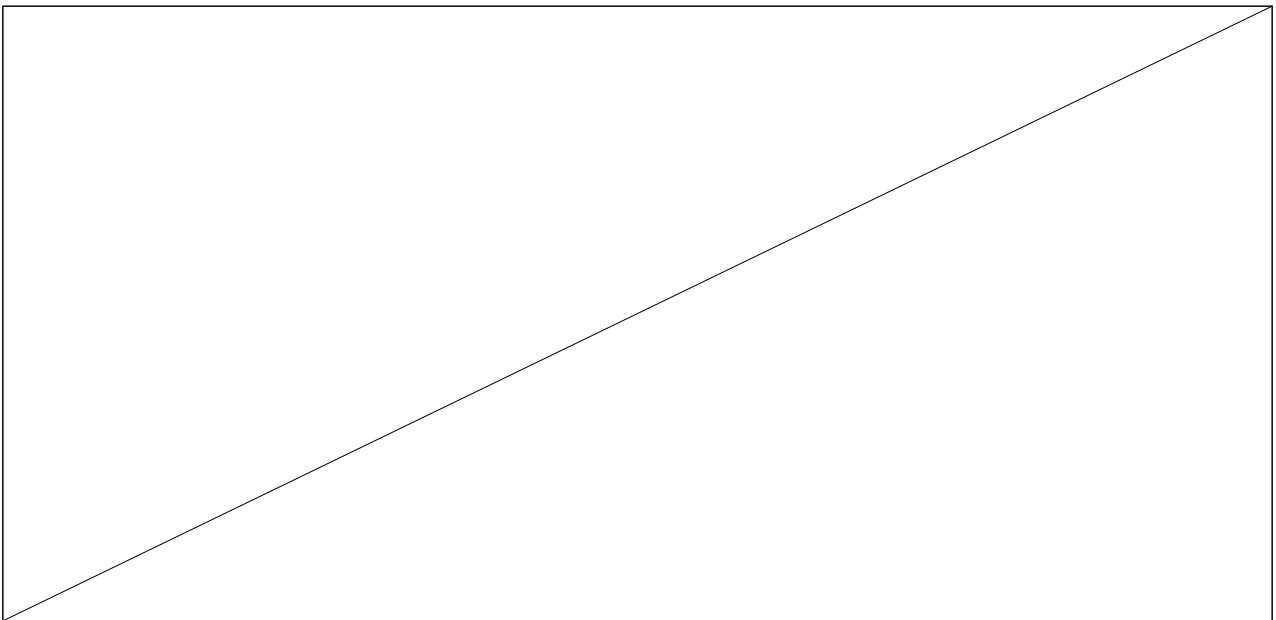
제6기 2021년 06월 30일 현재



3. ☆☆☆ 주상복합 개발사업 대물변제회수 경과

- ☆☆☆ 부동산PF와 관련, '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대손충당 금액 및 자산감액 부분을 운용평잔 및 수익률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처분에 따른 조치가 선행된 바 있어, 예술위 회계에서 ☆☆☆상가를 간접취득한 신탁계약이 장기대여금 100억원과 함께 ☆☆☆상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함
- 이러한 조치로 간접 취득하게 된 ☆☆☆상가의 자산가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상가 감정평가액은 '15.9월 21.85억원에서 '19.8월 46.14억원으로 상승하여 투자원금 회수에 긍정적 성과를 보였음

[표 3] 2022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자료 ('22.9.19.)



※ '21.9월 감정평가에 따른 ☆☆☆상가 자산가치 상승분은 현재 예술위 회계 미반영

Ⅲ. 감사결과

1. 총평

- '22년 <자산운용 및 관리실태> 자체감사 과정에서, ○○○○부서가 부실자산인 부동산PF의 손실회복을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제일차(유)를 설립·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 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감사를 진행

- 자산운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 ○○○○부서를 대상으로 '15년부터 현재까지 손실자산 회복을 위해 추진 된 ★★★★★제일차(유) 설립·운영실태 전반을 감사범위로 설정

-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 됨
 - 부실자산 회생업무 관련 내부통제 취약
 - 사용인감 관리규정 미흡

- 위와 같은 행위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초기 ☆☆☆상가 관련 부실자산 회생업무 계획 시 2~3년 내에 청산될 것으로 예상하여 행정사무상 내부통제에 대한 특별한 고민없이 업무가 추진되었으나 업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제반규정의 통제범위 안에서 관리되지 않는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 이에 대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

-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부서 실무자의 선의로 다행히 기금운용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부실자산 회생 업무에 대하여 기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상의 적절한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제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인감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흡하여 관리책임자가 불분명하고 사용목적 검토 및 이력관리 등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2. 점검결과 요약

- 부실자산 회생업무 관련 내부통제 취약
 - 행정사무상 기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 미흡
 - 제반규정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난 자산운용 행태 부적정
- 사용인감 관리규정 미흡
 - 관리책임자가 불분명하고 사용목적 검토 및 이력관리 등 부실

3. 감사결과 총괄

(단위 : 건, 명)

총건수	합계		변상	징계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2	-	-	-	-	-	-	-	-	-	2	-	-	-	-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제 목(지적사항)	처분 종류	처분요구사항
1	부실자산 회생업무 관련 내부통제 취약	개선 요구	☆☆☆상가 회생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상 기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없이 ☆☆☆상가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제일차(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운영하는 현재의 방식은 자산운용업무의 내부통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당함으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가 필요
2	사용인감 관리규정 미흡	개선 요구	○○○○부서의 업무상 빈번한 사용인감 사용을 고려한 기록관리 및 사용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인감 관리규정 제·개정 필요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 해당사항 없음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감사결과 증거서류 목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개 선 요 구

제 목 부실자산 회생업무 관련 내부통제 취약

소 관 부 서 ○○○○부(○○○○부서)

조 치 부 서 ○○○○부(○○○○부서)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분양형토지신탁계약 (신탁사-BBBB신탁, 시행사-주식회사FFFF, 시공사-CC건설산업주식회사) 수익원의 운용자 산인 ‘★★★★★★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14.12월 준공되어 입주개시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여 투자원금(100억원) 회수에 난항을 겪었다.

당시 예술위는 수익권 3순위로서 선순위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해당사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미분양 물건을 경매처분 하면 이에 대한 배당금을 수취하고 종결 할 수 있었으나, 선순위채권자들은 경매처분 대금이 자신들이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대물변제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예술위는 이 건과 관련하여 복수의 회계법인에 회수가가능성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3순위 수익권자인 예술위도 경매처분보다는 대물변제를 받아 향후 주변지역 상권이 형성되어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매각하는 것이 투자원금 회수에 더 유리하다는 의견을 확인하였고, '15.5월 2015년 제1차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위는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발생한다는 점, 또한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신탁계약을 변경하고 예술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대물변제 물건을 간접취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15.7월 법무법인 [OOOO], 회계법인 [OO]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관리 구조를 설계하였다.

그 결과, '15.9월 ★★★★★★★ 주상복합 건물 전면1층상가 전체(26개호실, 이하 '☆☆☆상가')를 임대 및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제일차(유)가 ☆☆☆상가 매각시 청산을 전제로 설립되었고, 예술위는 새로운 신탁계약을 통해 ☆☆☆상가를 간접 취득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간접 취득하게 된 ☆☆☆상가의 자산가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상가 대물변제가 발생하게 된 부동산PF '홍은 더 프라임 주상복합 개발사업'에 대하여 '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대손충당금액 및 자산감액 부분을 운용평잔 및 수익률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처분에 따른 조치가 선행된 바 있어, 예술위 회계에서 ☆☆☆상가를 간접취득한 신탁계약이 장기대여금 100억원과 함께 ☆☆☆상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 감정평가액은 '15.9월 21.85억원에서 '19.8월 46.14억원으로 상승하여 투자원금 회수에 긍정적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예술위는 ☆☆☆상가 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처리는 ★★★★★★★제일차(유) 명의로 진행하고, 이에 발생하는 수익금은 예술위로 귀속될 수 있도록 100억 상당의 대출계약을 비롯하여 사업약정, 담보신탁계약, 근질권설정계약 등을 통해 예술위가 사실상 ★★★★★★★제일차(유)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현재 ○○○○부(○○○○부서)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 주상복합 개발사업 대물변제회수 진행일람

시 기	내 용
' 14. 12월	- 준공 및 입주개시하였으나, 미분양 상태(아파트 88세대 중 27% 미분양, 오피스텔 18세대 중 93% 미분양 및 상가 33호실 전체 미분양)로 3순위 수익권자인 위원회의 투자금 회수에 난항
' 15. 4~5월	- 미분양 물건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분은 공사대금 및 1,2순위 수익권자의 몫으로 총당하고 지하2층 상가 부분을 위원회의 몫으로 대물변제 받기 위한 협의 진행
' 15. 5월	- 복수의 회계법인에 상황별 회수가능금액 용역의뢰 - 2015년 제1차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안건 : 본건 물건 대물변제 회수 및 사후관리 방안)
' 15. 6월	- 대물변제 회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위원장 결재 승인
' 15. 7~8월	- 회수방법 및 구조에 대한 법률 및 세무 자문 의뢰 - 새로운 신탁계약 구조 및 계약서 초안 작성
' 15. 9. 17	- 대물변제 신탁 계약 체결 · 기존의 신탁계약 종료 후 새로운 신탁계약을 통해 본건 물건 간접 취득 · 1,2순위 채권자 변제 완료(' 15.9월)로 3순위인 예술위의 신탁해지 동의 필요 · 예술위를 단독 우선수익자로 하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 · 모든 계산은 SPC 명의로 하며 SPC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예술위로 귀속
' 15. 10월	- PM사(☆☆☆상가 임대용역 관리회사) 선정 및 임대업 개시
' 15. 12월	- 회계결산시 21.85억원 대손충당금 환입(문화예술진흥기금 수익금 계상)
' 19. 8월	- 회계결산시 24.29억원 대손충당금 추가 환입(문화예술진흥기금 수익금 계상)

2. 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예술위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대출금 회수업무의 전결권자는 사무처장으로하고 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부서는 예술위 □□□□□□센터-3588(2015.10.29.) “『★★★★★★』 부동산 물건 대물변제회수 이후 사후관리 현황보고” 내부결재(사무처장 전결)에 근거하여, ☆☆☆상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 지출은 ★★★★★★제일차(유)에서 처리 후 예술위에 보고하고, PM사(임대운영 관리업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하며,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매각함으로써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관련업무를 점검한 결과, 이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통제는 조직임무의 달성에 관한 합리적인 확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설정한 계획·규정·방법·절차 및 수단으로서, 업무담당자의 재량권 일탈을 방지하고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부서는, ☆☆☆상가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보증금, 임대료 등)이 향후 ☆☆☆상가가 매각되어 ★★★★★★제일차(유)가 청산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귀속될 것을 감안하여 업무 편의상 예술위 수입으로 바로 계상하지 않고 ★★★★★★제일차(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고, 예술위가 체결한 사업약정에 따라 ★★★★★★제일차(유)의 법인 인감, 인감카드 등을 보유·사용하고 있어 ★★★★★★제일차(유)의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부통제가 정해진 바 없으므로 ○○○○부서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를 운용하였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제일차(유)의 당좌자산은 588,578,310원 (' 22.6월 회계감사 기준)이다.

○○○○부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및 예술위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일차(유)의 당좌자산은

구조적으로 예술위 회계를 벗어나 기금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의 통제범위 안에서 관리되지 않으므로, 이를 운용함에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당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서는 '15. 12월부터 '22.6월까지 ★★★★★★제일차(유) 당좌자산으로 총 22건의 단기금융상품 투자를 실시하였다.

○○○○부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자산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상품 선정원칙 등을 준수하며, 자산운용의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업무처리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범위를 벗어나서 진행 된, ★★★★★★제일차(유) 당좌자산 단기금융상품 투자는 ○○○○부서의 임의적 결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므로 그 성과와는 별개로 행정사무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자산운용 전반에 대한 심의·감독기능을 담당하는 자산운용위원회(위원장 참여), 리스크관리위원회(사무처장 참여)에서 ☆☆☆상가의 운영상황 보고 및 향후 처분방안 논의 등이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총액 규모 수준에서 투자원금 회수 적정성 검토 등의 현안을 다루며, ○○○○부-917(2020.03.27.)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투자부동산(☆☆☆상가) 임대료 한시적 인하 추진” 내부결재(위원장 결재)를 제외하곤 ☆☆☆상가 회생업무의 개별사안은 ○○○○부서의 자체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정사무가 추진되었으며, '21.5월 사무처장 직무대행의 요청으로 진행 된 ○○○○부서의 “☆☆☆주상복합 상가 관리현황 및 투자금 회수 방안 검토” 일상업무 보고 외에는 위임전결규정에 근거한 책임자의 관리·감독 행위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감사를 통해 최초로 실시한 ★★★★★★제일차(유) 회계감사 등으로 중대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으나,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부서 실무자의 선의에 기댄 결과로, 기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과 행정사무상의 적절한 내부 통제 없이는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2] ★★★★★제일차(유) 단기금융상품 투자내역 (~ ' 22.6월(회계감사일 기준))

연번	금융기관	상품명	운용개시일	매입가	수익률	환매일	회수금액 (세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관계부서 의견

○○○○부는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부실자산 관리 업무는 자산운용 업무와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나 인력 및 조직의 한계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행정사무에 대한 내부통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감사결과에 동의하며, 부실자산 회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를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장은 ☆☆☆상가 회생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상 기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없이 ☆☆☆상가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
★★★제일차(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운영하는 현재의 방식은 자산운용업무의 내부통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당함으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개 선 요 구

제 목 사용인감 관리규정 미흡
소 관 부 서 ○○○○부(○○○○부서)
조 치 부 서 ○○○○부(○○○○부서)
내 용

1. 업무개요

○○○○부서는 예술위가 '15.9월 ★★★★★★제일차(유)에게 제공하는 100억원 상당의 대출에 대하여, ★★★★★★제일차(유)는 ☆☆☆상가 매각시 청산을 전제로 설립되었으므로 흑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재무상태를 가능한 한 좋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20%로 하는 대출계약을 예술위 □□□□□□센터 -2994(2015.09.16.) “『★★★★★★』 부동산 물건 대물변제 회수(담보신탁계약) 추진” 내부결재(위원장 결재)로 승인받은 후 추진·체결하였다.

그런데 차후 과세당국이 예술위와 ★★★★★★제일차(유)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¹⁾으로 판단할 경우 연 20%의 이자율은 과도하여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일차(유) 세무대리인(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부서는 '16.11월 해당대출의 이자율을 연 4.6%로 낮추는 변경대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1) 법인세법상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 등을 “특수관계인”이라 명명하는데, 이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에 따른다.

[표 3] 대출계약서 변경사항

	최초 (' 15.9월)	변경 (' 16.11월)
제4조(이자율)	연 20%	' 16.3.6.까지는 연6.9% ' 16.3.7.부터는 연4.6%
제5조(이자 지급 및 대출원금의 상환)	<p>이자지급일</p> <p>- 대출원금의 지급의 완제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시작하여 매년도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각 말일)</p> <p>대출만기일</p> <p>- 대주가 차주에게 통보하는 날</p>	<p>이자지급일</p> <p>- 대출원금의 지급의 완제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시작하여 매년도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각 말일), 다만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는 위 효력발생일로부터 반기의 말일까지 이자에 대하여, 계약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는 그 반기의 첫날부터 위 계약종료일까지의 이자에 대하여 각 이자지급의무가 발생</p> <p>대출만기일</p> <p>- 대주가 차주에게 대출원리금 전부를 지급할 것을 통보하는 날</p>
제7조(변제총당)	<p>변제총당순서</p> <p>1. 대출원금</p> <p>2. 대출이자</p> <p>3. 지연손해금</p>	<p>변제총당순서</p> <p>1. 지연손해금</p> <p>2. 대출이자</p> <p>3. 대출원금</p>

2. 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예술위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에는 ‘자산운용담당자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 그 손실 발생만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고 명시되어 있고, 예술위 위임전결규정에서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대출금 회수업무의 전결권자는 사무처장으로하고 그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므로, 예술위의 수익 감소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포함 된 ★★ ★★★★★제일차(유)와의 대출계약 변경은 사무처장 전결을 거쳐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 받은 후 추진되었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당시 ○○○○부서는 예술위 □□□□□□센터-3588(2015.10.29.) “『★★★★★★』 부동산 물건 대물변제회수 이후 사후관리 현황보고” 내부결재(사무처장 전결) 이후로 ☆☆☆상가와 관련한 부실자산 회수업무 전체를 위임받은 것으로 인지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판단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내부보고 및 결재없이 대출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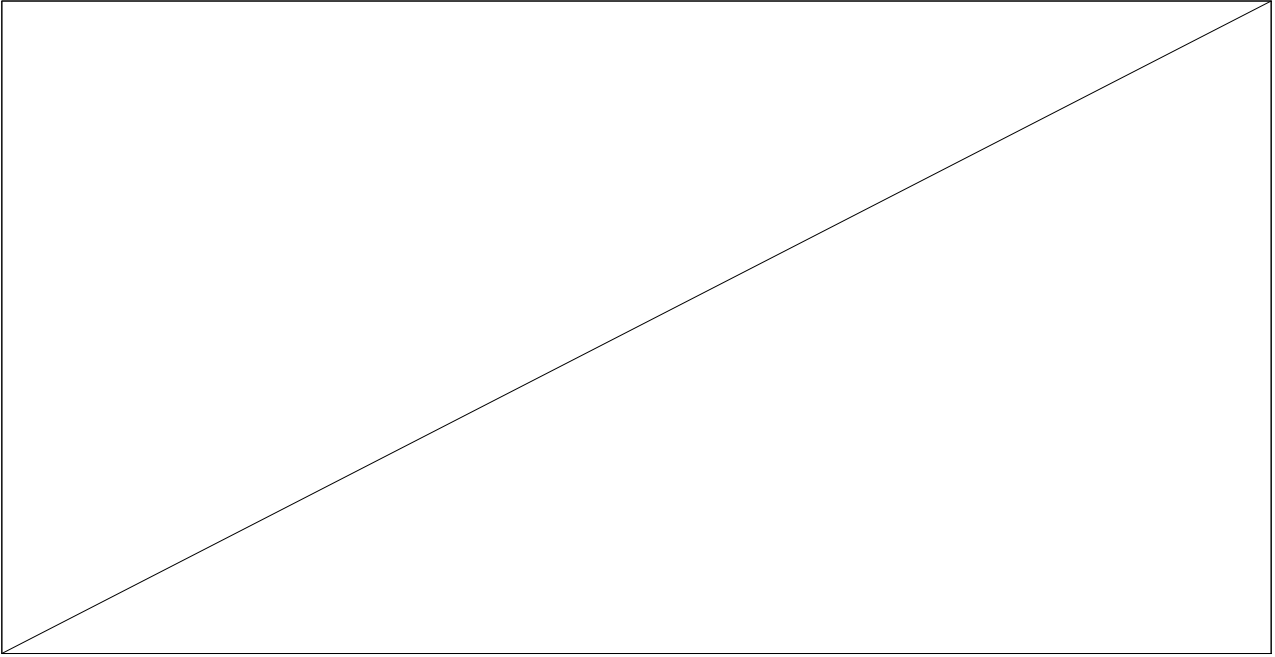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 ○○○○부서가 내부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도 ★★★★★★★★ 제일차(유)와의 대출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부서가 예술위의 사용인감 도장을 보유·관리하며 제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위는 사무관리규정 제35조(특수 관인)에 근거하여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통상적으로 기금운용 및 관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사용인감을 보유·관리하며 신규 계좌개설, 재발행, 이관, 해지, 출금, 잔액증명서 요청 등 기금운용과 관련한 제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흡하여 사용인감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불분명하고 사용목적 검토 및 이력 관리 등이 취약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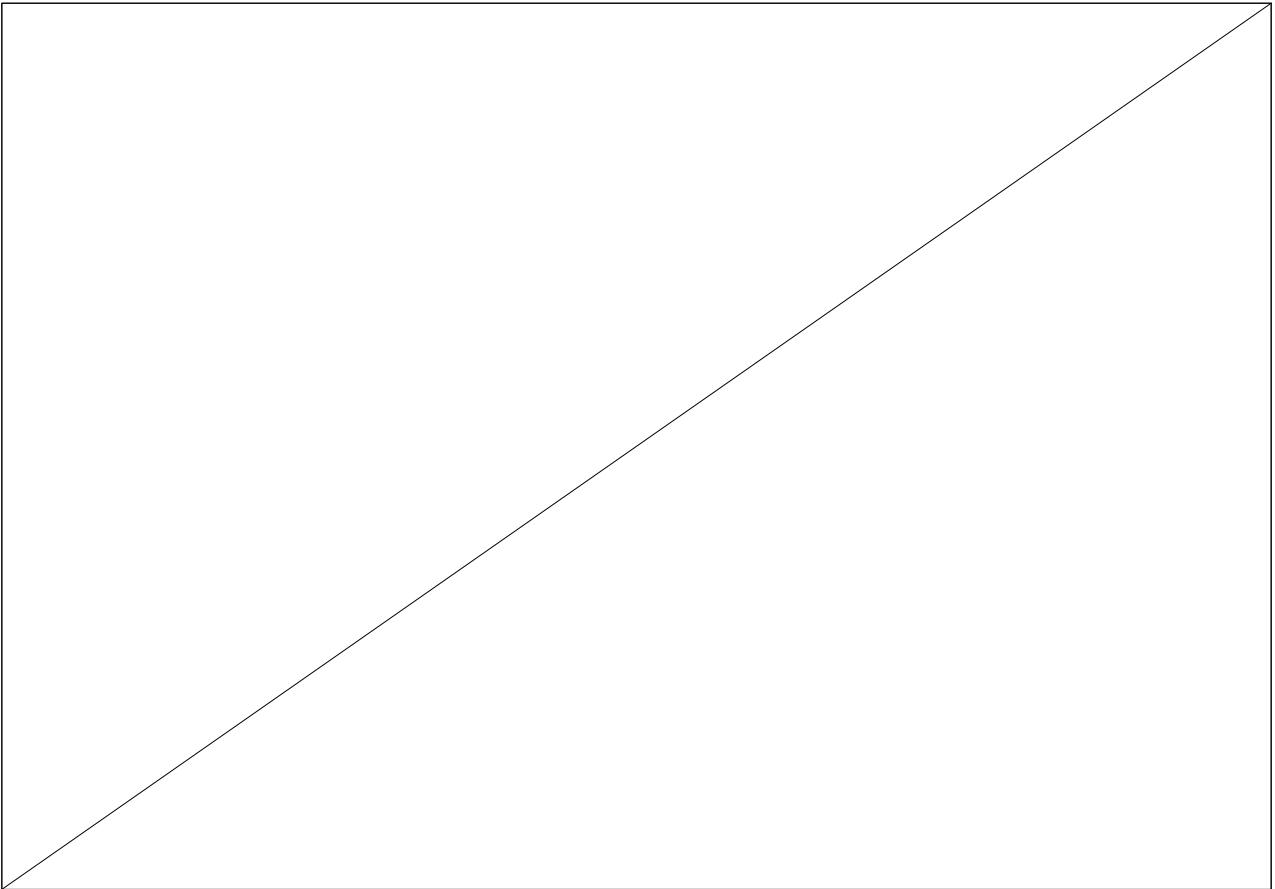
타 기관의 경우, 인장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함에 있어 관리책임, 인영, 인장 규격, 각인 및 폐기, 각인 절차, 폐기 절차, 보관, 등록 및 효력, 분실 및 도난에 따른 조치, 사용목적, 날인 대장, 날인 절차, 날인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년 예술위 자체감사를 통해 처분 된 법인인감 관리·감독에 대한 시정 요구에 따라, 기관의 직인 및 날인을 관리하는 △△△△부는 '21.8월부터 내부행정시스템(ERP)을 활용하는 관인, 법인인감 날인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전자적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서의 사용인감에 대한 사용통제 및 이력관리까지 포괄하지는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진 1] 사용인감을 날인한 대출변경계약서



[사진 2] ○○○○부서가 보유·관리하는 사용인감도장과 사용인감계



관계부서 의견

○○○○부는 감사결과에 동의하며, △△△△부의 관인 관리 절차와 타 기관의 사용인감 관련 절차를 참고하여 사용인감에 대한 기록관리 및 사용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장은 ◎◎◎◎부서의 업무상 빈번한 사용인감 사용을 고려한 기록관리 및 사용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인감 관련규정을 제·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선]